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규정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97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규정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안 제33조 등) ..	2
※ [참고] 해외사례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외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8.

다. 회 부 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발달·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규정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안 제33조 등)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등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장애인과 독서·인지·학습 기능의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제공 및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수어 외에도 자막·화면해설 및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의 제작·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u>시각장애인</u> 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u>사람</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u>점자로 변환</u> 하여 <u>복제·배포</u> 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u>청각장애인</u>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한국수어로 변환</u>할 수 있고, 이	제33조(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u>시각장애인</u> 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u>사람</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u>점자로 변환</u> 하여 <u>복제·배포</u>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u>청각장애인</u>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한국수어로 변환</u> 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u>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u>	

현	행	개 정 안
② <u>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u> <u>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u>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u>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u> ③ <u>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u>(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	리한 한국수어를 <u>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u> ② <u>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u> <u>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u>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u>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u> ③ <u>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u>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	할 수 있다. ③ <u>장애인과 독서·인지·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u> <u>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u> 공표된 저작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대체자료를 제작·제공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u> 1. 점자·음성 또는 확대 문자 2. 한국수어·자막 또는 화면해설 3.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자막 4. 읽기 쉬운 자료, 큰 글자 자료 5.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u>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u>(보조자를 포함한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

현	행	개 정 안
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u>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u>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u>대체자료로 변환</u>하여 이를 <u>복제</u>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u>대체자료의 범위</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경우 <u>청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u>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u>대체자료로 변환</u>하여 이를 <u>복제</u>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u>청각장애인등의 범위</u>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u>대체자료의 범위</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 접근하는 경우 <u>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u>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을 <u>대체자료로 변환</u>하여 이를 <u>복제</u>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u>대체자료를 제작·제공하는 자</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지원</u>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기능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3. 접근성 제공 저작물에 대한 공공 조달 우대 4. 그 밖에 접근성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3항·제4항에 따른 <u>대체자료의 범위, 제작·제공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방법</u> 및 제5항에 따른 <u>지원 대상·방법·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저작권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용허락¹⁾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 저작권제한사유(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와 포괄적 제한사유(제35조의5)를 두어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저작권법」의 저작권제한 규정]

구 분	조 문
개별적 제한사유 (제23조 ~ 제36조)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u>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u> <u>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u>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포괄적 제한사유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개별적 제한사유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 제33조²⁾ 및 제33조의2³⁾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

1)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근권 보장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작물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등⁴⁾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된

2)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5)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3조의2는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⁶⁾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6)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처럼 현행법은 시각장애인등 및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지·학습 기능의 장애나 고령 등으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장애인과 독서·인지·학습 기능의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저작물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제작·제공 및 복제 등을 허용함과 아울러 대체자료를 제작·제공하는 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작물 접근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 등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⁷⁾뿐 아니라 독서·인지·학습 기능의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저작물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도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입하고 있어 적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바,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비교 형량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적 규범인 「마라케시 조약」⁸⁾에서도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체자료의 이용 대상, 변환 대상 저작물 및 대체자료의 종류 등을 확대하는 경우 저작권 제한의 범위가 장애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접근 제약 해소 목적을 넘어 이미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제한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조약상 이른바 ‘3단계 테스트’ 원칙⁹⁾¹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8) 정식 명칭은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채택한 조약으로 저작물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 이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준함.

9) 저작권 제한·예외는 일반적으로 (1)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2)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3) 특별한 경우라는 원칙(3단계 테스트)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범위를 ‘저작물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하고 대체자료의 종류에 확대문자, 읽기 쉬운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석에 따라 일반적 이용까지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큰 글자 자료 등은 민간 접근성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6

- 10)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제11조(제한 및 예외에 관한 일반 의무)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채택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베른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및 그 해석에 관한 협정들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의무를 준수한다.
- 가. 베른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같은 조약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적용 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명	내용
일본	·법령 : 저작권법 제37조의2 ·대상 : 공표된 청각저작물 ·방식 : 자막 ·이용 : 복제, 공중송신 ·주체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 제37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청각장애인 기타 청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5항에서 「청각장애자 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이용의 구분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 청각에 의하여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청각 및 다른 지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당해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 당해 저작물에서 복제되어 있는 것 기타 당해 저작물과 일체로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청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청각장애인 등으로서 당해 방식으로는 당해 청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각각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이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당해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에 대하여, 이를 문자로 (변환)하는 것 기타 당해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것 2. 오로지 당해 청각장애인 등 전용의 대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당해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것 기타 당해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에 의한 당해 음성의 복제와 함께 하는 것에 한한다)
미국	·법령 : 저작권법 제121조 ·대상 : 공표된 어문저작물(해석상 도형, 표, 그래프, 사진 등도 포함), 음악저작물 중 악보, ·방식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 ·이용 : 복제, 배포 제121조 배타적 권리의 제한: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a)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격있는 사람의 배타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전에 발행된 어문저작물의 음반이나 복제 또는 악보나 문자의 형식으로 고정된 이전에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음반이나 복제물에 해당한다면 권한있는 기관이 미국에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b)(1) 이 조가 적용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자격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포맷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고; (B) 접근가능한 포맷 이외의 포맷으로 추가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침해임을 통지해야 하고; (C) 최초발행일과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하는 저작권 통지를 해야 한다. (2) 이하의 조항은 표준화, 보안 또는 규준 참조 검사(norm -referenced test) 및, 관련

국가명	내용
	시험 자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인 인간 언어(그림저작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로 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c) 제10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또는 중등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쇄된 교육 자료의 발행인이 설명된 전자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 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 Center에 배포하는 것은 장애인 교육법 제612(a)(23)(C), 제613(a)(6) 및 제674(e)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일 - (1) 주 교육 기관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인쇄 교육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고; (2) 발행인은 그러한 인쇄 교육 자료를 인쇄 형식으로 출판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3) 그러한 복제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인쇄된 교육 자료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d)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접근가능한 포맷"은 적절한 사람이 (3)항에 규정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복제물 또는 음반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방식 또는 형식을 의미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시각 장애인이나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의 훈련, 교육 또는 맞춤형 읽기 또는 정보 접근 요구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비영리 조직 또는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3) "자격있는 사람"은 다른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자를 의미한다 - (A) 시각장애인 (B)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시각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될 수 없는 시각 장애 또는 인식 또는 독서 장애가 있어 인쇄물을 사람과 장애나 손상이 없는 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읽을 수 없는 자; 또는 (C) 신체 장애로 인해 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읽기에 허용되는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자; 그리고 (4) "인쇄 교육 자료"는 장애인 교육법 674(e)(3)(C)조 이하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독일	·법령 : 저작권법 제45조a(장애인) ·대상 : 공표된 저작물 ·방식 :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방식 ·이용 : 복제, 배포 * 사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관리단체가 행사) 제45의a 장애인 (1)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장애로 인해 이미 입수가 가능한 방법으로는, 감각기관에 의한 감득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들만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와 장애인에 대한 그 복제물의 배포는 비영리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또 그것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화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2) 복제와 배포를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적정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개개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은 이로부터 제외된다. 이 청구권은 오직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3) 어문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중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것에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법 제45조의b부터 제456조의d까지 적용된다. ·법령 : 저작권법 제45조b(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 ·대상 : 공표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방식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 ·이용 : 복제

국가명	내용
	제45의b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 (1) 시각장애 또는 독서장애를 가진 사람은 문자와 오디오 포맷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중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가능한 포맷으로의 변경을 위해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권한에는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하한 형태의 삽화 역시 포함한다. 복제본이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저작물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제약으로 인해 또는 광학적 보조기구를 동원하였음에도 존재하는 감각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어문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령 : 저작권법 제45조c(권한있는 기관) ·대상 : 공표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방식 : 장애인만을 위한 접근가능한 포맷 ·이용 : 복제 * 사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관리단체가 행사) 제45의c 권한있는 기관: 보상: 위임입법을 위한 수권 (1) 권한있는 기관은 문자와 오디오 포맷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중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을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만을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으로의 변형을 위해 복제할 수 있다. 제45조의b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을 준용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복제본을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 더 나아가 다른 권한있는 기관에 대출, 배포하거나 전송 또는 여차의 공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은 공익적인 방법으로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을 위해 교육서비스 또는 재활적인 독서 및 정보접근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에 대해 저작자는 적정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청구권은 오로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5)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에는 연방참사관의 동의를 요구되지 않는 법규명령을 통해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위임된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의 의무 2. 권한있는 기관으로서 독일특허상표청에 신고할 의무 3. 집중관리단체법 제8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제1호상의 의무에 대한 독일 특허상표청의 감독
뉴질랜드	·법령 : 저작권법 제89조 ·대상 : 커뮤니케이션 저작물 ·방식 : 자막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수정 ·이용 : 복제, 발행 ·주체 : 비영리 목적의 지정 단체 제89조 커뮤니케이션 저작물의 자막 복제 규정 (1)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으로 지정된 단체는 청각장애인, 난청인 또는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게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자막이 붙여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정된 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에 포함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고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발행할 수 있다. (2) 단체가 영리를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운영될 때에는, (1)항의 목적으로 지정될 수 없다.